

##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”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, 제7조, 제8조와 대학원학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위과정)** 계약학과에는 석사학위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과 박사학위과정(이하 “박사과정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**제3조(학생의 정원)**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,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하여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)**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산업체 등과 년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.(개정 2018. 9. 1.)

② 교육과정의 운영은 해당 대학원에서 운영하며 전체 교육과정의 30% 이상 수업을 전임교원이 담당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 9. 1.)

**제5조(교육과정의 이수 인정)**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18. 9. 1.)

**제6조(입학자격 및 입학전형)** ①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대학원학칙 제7조제1항에 의한다.

② 입학전형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실시하며 전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다만,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(개정 2018. 9. 1.)

**제7조(운영경비 부담 및 학생 납부금)**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,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또는 3자 계약에 의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.(개정 2018. 9. 1.)

②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산업체로가 직접 납부하며,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납부할 수 없다.(2018. 9. 1.)

**제8조(학기 및 수업일수)**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로 한다.

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

③ 수업은 출석수업, 현장실습수업,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수업장소는 계약에 의한다.

④ 계약학과 강좌의 강의담당시수는 책임시수로 인정하지 않으며, 강의료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8. 9. 1.)

⑤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나 질병,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.(개정 2018. 9. 1.)

**제9조(설치·운영기간)** ①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이나 유사한 학과 또는 전공을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계약학과 신설은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③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기간은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하되, 계약 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정한다.

④ 계약학과 강좌의 강의담당시수는 책임시수로 인정하지 않으며, 강의료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(2018. 9. 1.)

⑤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나 질병,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.(2018. 9. 1.)

**제10조(계약학과 운영)** 계약학과 학사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대학원에서 수행한다.

**제11조(계약학과 폐기로 인한 학생 보호)** ①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, 징계해고,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(개정 2018. 9. 1.)

② 임금체불, 휴업, 사업장 이전,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.(개정 2018. 9. 1.)

③ 산업체 등의 도산, 구조조정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.(개정 2018. 9. 1.)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,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 9. 1.)

**제11조의2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.(신설 2018. 9. 1.)

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 내외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(신설 2018. 9. 1.)

③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(신설 2018. 9. 1.)

1. 학과 운영계획 수립
2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3. 휴학, 복학, 제적 등 학생의 주요한 학적 변동 사항
4.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

**제12조(준용규정)** ① 이 내규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명대학교 제규정 및 대학원학칙, 학칙시행세칙, 관련 내규, 계약학과 운영요령(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포함)을 준용한다.(개정 2018. 9. 1.)

**제13조(보칙)**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또는 해당 대학원의 특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의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